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권기수 의원외 6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1년 2월 25일

○ 회부일자 : 2011년 3월 2일

3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범조항을 변경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범조항 변경(안 제1조, 제2조)

- 「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」 제19조를 제41조로 변경

나. 시험수수료(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) 도보 고시 조항을

시행규칙에서 조례에 명시(안 제2조)

다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정비(안 제3조, 제4조)

-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 으로, “제1항의 규정에

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

- “시정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정에 필요한”으로 개정.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범 조항을 변경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도보 고시 조항을 조례안에 명시하여 적기에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

○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